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현재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 대인피해에 대해 300만원, 대물피해에 대해 100만원을 한도로 운전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외에 피해자에 대한 보상 및 보험금을 보험회사등이 전액 부담함에 따라 궁극적으로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로 이를 부담하게 됨. 음주운전 사고시 운전자에 대한 구상을 강화함으로써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일반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음주운전자에 대한 구상 강화(안 제10조)

보험회사등이 음주운전자에 대해 구상할 수 있는 한도 금액을 현행 대인피해 300만원, 대물피해 100만원을 대인피해 1,000만원, 대물피해 500만원으로 상향.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29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사고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가. 사망 또는 부상의 경우 : 사고 1건당 300만원

나. 재물의 멸실(滅失) 또는 훼손의 경우 : 사고 1건당 100만원

2. 법 제 29조제1항제2호의 사고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가. 사망 또는 부상의 경우 : 사고 1건당 1,000만원

나. 재물의 멸실(滅失) 또는 훼손의 경우 : 사고 1건당 500만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금 또는 공제금의 구상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신규 가입하거나 갱신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보험기간 또는 공제기간 중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구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구상금액) 법 제29조제1항 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 는 금액”이란 보험회사등이 피 해자에게 실제로 지급한 보험금 또는 공제금의 총액을 말한다. 다만, 보험회사등이 실제로 지 급한 보험금 또는 공제금의 총 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10조(구상금액) ----- ----- ----- ----- -----. ----- ----- ----- ----- -----.
<u>1. 사망 또는 부상의 경우 : 사 고 1건당 300만원</u>	<u>1. 법 제29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사고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u> <u>가. 사망 또는 부상의 경우 :</u> <u>사고 1건당 300만원</u> <u>나. 재물의 멸실(滅失) 또는</u> <u>훼손의 경우 : 사고 1건당</u> <u>100만원</u>
<u>2. 재물의 멸실(滅失) 또는 훼손 의 경우 : 사고 1건당 100만원</u>	<u>2. 법 제 29조제1항제2호의 사 고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u>

가. 사망 또는 부상의 경우 :

사고 1건당 1,000만원

나. 재물의 멸실(滅失) 또는

훼손의 경우 : 사고 1건당

500만원